

검토보고서

2025. 6. 16. (월)

순서	검토안건	제안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새마포담당관 소관】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1. 안 건 명

-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25년 5월 23일(금)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25년 5월 23일(금)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검토보고]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I 마포구 세입·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잉여금			
				소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순세계 잉여금
합계	989,708,952,905	997,646,934,719	840,761,069,468	156,885,865,251	63,736,994,745	9,806,131,090	83,342,739,416
일회 반계	940,452,021,649	948,853,683,257	804,352,041,605	144,501,641,652	58,249,671,225	9,651,123,725	76,600,846,702
특회 별계	49,256,931,256	48,793,251,462	36,409,027,863	12,384,223,599	5,487,323,520	155,007,365	6,741,892,714

II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새마포담당관	-	331,890	331,890	-	100%

※ 징수율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나.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새마포담당관	429,736,000	389,972,515	-	-	39,763,485	90.74%

※ 집행률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집행잔액	집행잔액원인별 금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새마포담당관	39,763,485	-	1,729,000	-	-	38,034,485	-

라. 집행을 저조 사업 현황

【집행률(지출액/예산현액) 70% 미만 기준, 단위 : 원】

구분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새마포 담당관 (3건)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7,924,000	3,482,000	0	0	4,442,000	43.94%
	365구민소통폰 운영	1,462,000	952,850	0	0	509,150	65.17%
	기본경비	60,337,000	39,436,015	0	0	20,900,985	65.36%

마. 다음연도 이월(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 : 없음

바.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1) 예산 이용 : 없음
- 2) 예산 전용

(단위 : 원)

부서	세부사업	전용금액	사유
합계	5건	7,877,000	
새마포 담당관	주요정책개발 (사무관리비)	830,000	민선8기 공약 추진사항 점검 관련 마포구 주민배심원회의 개최·운영을 위한 예산 전용(사무관리비)
새마포 담당관	의회와 협력 및 소통 (사무관리비)	350,000	마포구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심사수당을 위한 예산 전용(행사실비지원금)
새마포 담당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 (사무관리비)	537,000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정기회의 개최에 따른 자문단 참석수당 예산 부족분 확보(사무관리비)

부서	세부사업	전용금액	사 유
새 마 포 담 당 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 (사 무 관 리 비)	3,358,000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및 법률자문료 지급 (사무관리비)
새 마 포 담 당 관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포 상 금)	2,802,000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및 법률자문료 지급 (사무관리비)

3) 예산 이체 : 없음

II 검토의견

1.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

-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3만 1,890원으로 징수율은 100%임.
-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억 2,973만 6,000원이며, 지출액 3억 8,997만 2,515원으로 집행률은 90.74%임.
- 집행잔액은 3,976만 3,485원이며, 집행잔액원인별 금액은 예산절감액 172만 9,000원, 지출잔액 3,803만 4,485원임.
- 집행률 저조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70% 미만인 사업으로 집행률이 43.94%인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등 총 3건임.
- 다음연도 이월(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없음.
-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이체 현황은 없으나 전용은 5건, 787만 7,000원이 있으며, 주요 전용 사유는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및 법률자문료 지급임.

2.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결산

- 해당사항 없음.

3.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2024년 새마포담당관은 체계적·전략적 구정 비전 실현, 적극적인 구민의견 반영으로 소통과 혁신의 행정문화 조성 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공약사업 연차별 목표 달성률, 소송 승소율 등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2, 달성 1개를 나타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계획서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성과계획 목표체계와 예산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 「지방회계법」 제16조제4항에 의거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과계획 수립 후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 배분·집행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차년도에 환류하는 구조이나,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지표 설정은 너무 보수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초과 달성하는 사례들이 있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서면으로 보이는 목표 달성률이 아닌 실제 구민에게 반영되는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

보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타당하고 적합한지 검토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과적인 피드백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작년 집행률 저조사업 중 주요정책 개발은 집행가능성을 검토하고 소요예산 산출을 보다 정확하게 하여 예산에 반영한 결과 집행률 95.92%를 달성하였으며, 창의행정 운영은 집행률 73.89%로 작년대비 불용액이 줄어듦으로써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함.
- 하지만,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해 마포구의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집행률이 저조함. 작년 집행률 27.70% 대비 올해는 43.94%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아직 집행률이 미비함에 따라 구민 및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양질의 제안이 접수 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임
- 365 구민소통폰 운영은 구민 의견 종합수렴을 위한 직통 문자 상담을 운영함으로써 소통과 참여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서 홍보 등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과를 사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보완·개선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걱정성 여부, 예산의 전용 또는 변경을 통해 증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한 걱정성 여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심의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